

장학금 지급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2.2.27.		16		
2	2013.4.22.		17		
3	2014.4.22.		18		
4	2016.3.1		19		
5	2016.10.28		20		
6	2017.6.19		21		
7	2018.3.1		22		
8	2019.3.6		23		
9	2019.8.26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장학금 지급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우수한 재능을 갖추었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, 또는 학업성적 및 품행 등에 있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학생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인문자연학부장, 각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3.6>
2.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3. 위원회의 회의록 유지와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.

제3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예산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,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추천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선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학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4조 (장학금 및 지급대상) ① 이 규정에 장학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및 생활보조금을 말한다. <개정 2013.4.22.><개정 2016.3.1.>

- ②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따라 등록금 전액장학금 정률 장학금, 정액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- ③ 전항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
 2. 학술연마에 있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3. 신입생 중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자
 4.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, 북한 귀순 동포
 5.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6.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총장 및 해당 기관장 특별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7. 본교 교직원, 재단 임직원 및 재단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자녀<개정 2014.4.22.>
 8.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④ 장학금 수혜자격은 수업연한 이내인 자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

인 자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6.10.28., 2017.6.19>

1. 근로장학 및 기타장학 수혜자(포상성, 생활비지원 등 등록금 초과지급 장학)
<개정 2019.8.26>
2. 협약에 의하여 학점 신청이 12학점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 교환학생
3. 신입생 및 편입생

제5조 (교외 장학금) ① 교외에서 기탁된 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른다.

② 출연자의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계열별 학부(과) 인원 및 교외장학 수혜인원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을 결정하며,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처장이 선정한다.<개정2016.10.28>

③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2.2.27>

제6조 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등록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은 매학기 중에 지급한다.<개정2016.10.28>

③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 간으로 한다.

다만, 교외장학금 중 계속 지급대상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 (장학금액) 장학금액은 매 학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8조 (이중수혜)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 할 수 있다. 단 교외장학중 출연자가 장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근로장학, 해외 탐방장학 등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장학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2.2.27.,2013.4.22.,2016.3.1>

제9조 (장학생 교체) 선정된 장학생이 규정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 순위자로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

제10조 (명단의 공개) 장학생이 선정되면 그 사실과 내역을 각 수혜자에게 통보한다.

<개정 2012.2.27>

제11조 (대상의 제한)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 성적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3.4.22.>

1. 복학
2. 전과
3. 재입학
4. 징계(유기정학 이상)자<개정 2013.4.22.>
5. 한 학기 이상 외국대학 교환학생, 해외탐방, 어학연수 등<개정 2013.4.22.>

제12조 (장학금 지급중지)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4.22.,2016.3.1.,2018.3.1>

1. 전과를 하였을 때(성적장학에 한함)<개정 2013.4.22.>
2. 자퇴 또는 제적된 때<개정 2013.4.22. 2019.3.6>
3. 미등록 휴학(등록금 지원 장학에 한함)<개정2013.4.22.,2019.8.26>

4. <삭제 2013.4.22.>

제12조의1 (장학금의 반환) ① 규정 제12조의 사유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중지 또는 취소 되었을 경우 수혜자는 등록금 보전 목적의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3.6>

② 수혜자가 장학금 반환을 통보받고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
제13조 (사무관장)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.

제14조 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 (준용) 본 규정 이외의 장학관계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10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2월1일부터 적용한다.
1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1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1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1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1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